

2023년 제3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

1. 일 시 : 2023년 6월 29일(목) 오후 3시
(회의소집일 : 2023년 6월 14일(수))
2. 장 소 : 대학본부 2층 회의실
3. 개최기도 : 한혜실 위원
4. 참석현황 (정원 12명, 재적 12명, 참석 9명)

구성위원	정원	재적	참 석 자 명 단	불 참 자 명 단
교 원	3명	3명	이정옥 김대용	최경윤
직 원	2명	2명	김동인 조은미	
조 교	1명	1명	조우진	
학 생	3명	3명	김예은	강다영 최준희
동 문	2명	2명	한혜실 함선희	
외부인사	1명	1명	이영섭	
합 계	12명	12명	9명	3명

- 배석자 : 형희경 교무처장, 한송희(간사)

5. 안 건

- 1) 예수대학교 학칙 개정(안) 심의 건.
- 2) 예수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개정(안) 심의 건.
- 3) 예수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(안) 심의 건.
- 4) 예수대학교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개정(안) 심의 건.
- 5)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간 서명자 지명 건.

6. 성원확인 및 개회선언

- 한혜실 의장이 정원 12명 중 9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회선언을 하다.

김동인

김 대 용

조 우 진

7. 전 회의록 접수

- 전 회의록 확인 후 김동인 의원의 동의와 조우진 의원의 재청으로 참석의원 9명 중 9명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접수하기로 의결하다.

8. 회의내용

1) 제1호 의안 : 예수대학교 학칙 개정(안) 심의 건

- 한혜실 의장이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.
- 형희경 교무처장이 예수대학교 학칙 개정(안)을 신규대조표로 설명하다.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제36조의2(학습경험인정) ① 학생의 전공에 따른 교육과정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·외 다른 학교 및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에서 행한 학습·연구·실습 또는 근무한 경우(군복무경험 포함)을 우리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인정범위는 따로 정한다.	제36조의2(학점의 인정) 고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사항을 우리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인정범위는 따로 정한다.	고등교육법 제23조(학점의 인정 등)에 따라 정의하고자 함.
제47조(학점의 인정) 이하생략	제47조(학점 인정)	
제49조(학기당 취득학점) ① 일반학기의 취득기준학점은 18학점으로 한다. 다만, 교과과정 운영상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24학점까지 취득하게 할 수 있다. ②~④ 생략	제49조(학기당 취득학점) ① 일반학기 취득학점은 최소 12학점 이상, 최대 21학점 이하로 한다. 다만, 교과과정 운영상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24학점까지 취득하게 할 수 있다. ②~④ 생략	학생들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자율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기 위함

- 논의 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이영섭 의원의 동의와 함선희 의원의 재청으로 참석의원 9명 중 9명이 찬성하니 의장이 예수대학교 학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하기로 의결하였음을 공포하다.

김동인

김대용

조우진

2) 제2호 의안 : 예수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개정(안) 심의 건

- 한혜실 의장이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.
- 형희경 교무처장이 예수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개정(안)을 신구대조표로 설명하다.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제6조(신청학점) ① 학생은 매 학기 18학점 수강을 기준으로 하되 12학점 이상, 21학점 이하 수강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, 최종학년의 최소 수강학점은 7학점 이상으로 한다. 단, 교직과정과 부전공을 이수하는 학생 및 편입생은 24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.	제6조(신청학점) ① 학생은 매 학기 12학점 이상, 21학점 이하 수강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, 최종학년의 최소 수강학점은 7학점 이상으로 한다. 단, 교직과정과 부전공을 이수하는 학생 및 편입생은 24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.	학생들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자율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기 위함
제22조의2(학사경고 조치) ① 생략 ② 직전학기까지 연속하여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당해학기 수강신청 가능학점에서 3학점을 제한한다. 단, 대학주관 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수강학점 제한을 하지 않는다. ③~④ 생략	제22조의2(학사경고 및 학습부진 조치) ① 현행 ② 직전학기까지 연속하여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당해학기 수강신청 가능학점에서 3학점을 제한한다. 단, 교수학습개발센터의 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수강학점 제한을 하지 않는다. ③~④ 생략	학사경고 뿐만 아니라 학습부진에 대한 조치도 명시되고 있어 조명을 개정하고자 하고, 대학주관이 아닌 실시기관을 명시하고자 함.
제28조(교과목의 재수강) ①~④ 생략 ⑤ 학점교류를 통하여 취득한 성적을 다시 재수강 할 경우 최고점수는 따로 정한다.	제28조(교과목의 재수강) ①~④ 현행 ⑤ 학점교류를 통하여 취득한 성적을 다시 재수강 할 경우 최고점수는 우리대학 기준에 따른다.	학점교류 재수강 기준에 대하여 우리대학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함.

- 논의 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조은미 의원의 동의와 조우진 의원의 재청으로 참석의원 9명 중 9명이 찬성하니, 의장이 예수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하기로 의결하였음을 공포하다.

김동민

김대웅

조우진

3) 제3호 의안 : 예수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(안) 심의 건

- 한혜실 의장이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.
- 형희경 교무처장이 예수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(안)을 신규대조표로 설명하다.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제28조(학위청구논문 등 제출자격)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제출 또는 학위청구논문 대체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. 1.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. 단, 학위청구논문 대체심사 신청의 경우 제20조 제3항에 따른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. 2. - 4. 생략	제28조(학위청구논문 등 제출자격)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제출 또는 학위청구논문 대체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. 1.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. 단, 학위청구논문 대체심사 신청의 경우 제20조 제3항에 따른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또는 신청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자. 2. - 4. 현행	학위청구논문 대체심사 신청은 4학기에 진행되는데, 4학기까지 학점을 취득하고 있어 취득 후 신청하려면 수료 후에 가능함.
제30조(논문제출자격 재부여) 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였으나, 학위청구논문 제출년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1회에 한하여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신청을 할 수 있다. ②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 받은 경우, 논문제출 잔여기한은 허가 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석사 2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논문심사 합격시까지 매학기 연구등록금(수업료 1/4)을 납부하여야 한다.	제30조(논문제출자격 재부여) 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였으나, 학위청구논문 제출년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1회에 한하여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신청을 할 수 있다. 단, 제28조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해당자격을 충족한 후 재부여 신청할 수 있다. ②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 받은 경우, 논문제출 잔여기한은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석사 2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학위논문을 제출하는 학기에 연구생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 연구생등록금은 당해학기 수업료의 1/4로 한다.	논문제출자격 재부여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하고, 연구생등록금에 대한 납부기간 변경

김종인

김대룡

조우권

③ 생략	③ 현행	
제30조의2(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경과자에 대한 특례) ① 본교 대학원 학위과정을 수료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 중 학위청구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특례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. ② 본조 제1항의 신청자 중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특례 적용 대상자가 되며 승인은 1회에 한한다. ③ 특례적용 대상자는 특례승인을 받은 학기부터 학위논문을 제출하는 학기까지 매학기 연구등록금(수업료의 1/4)을 납부하여야 한다. ④ 특례적용 대상자는 승인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1년 이내에 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.	<삭제>	수료 후 학위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된 자는 본 규정 제30조에 따라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하고 있어 본 조항은 삭제하고 제30조에 따라 재부여 하고자 함.

- 김대용 의원이 대학원 학칙 제28조 1호에서 '모두 취득한 자 또는 신청 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자'에서 '취득할 수 있는 자'는 자격 요건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 명확히 '취득 예정자'라고 하는 수정 의견을 개진하다.
- 한혜실 의장이 대학원 학칙 제30조 2항에서 '다만, 학위논문을 제출하는 학기에 연구생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'에서 '연구생등록금'을 기존 대로 '연구등록금'으로 하는 수정 의견을 개진하다.
- 형희경 교무처장이 수정 의견에 대해 재검토 후 규정 개정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하다.
- 논의 후 본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대학에서 검토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이외의 규정 개정안은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이정옥 의원의 동의와 김예은 의원의 재청으로 참석 의원 9명 중 9명이 찬성하니 의장이 예수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하기로 의결하였음을 공포하다.

김동인

김대용

조우진

4) 제4호 의안 : 예수대학교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개정(안) 심의 건

- 한혜실 의장이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.
- 형희경 교무처장이 예수대학교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개정(안)을 신규대조표로 설명하다.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제7조(등록의 종류) 대학원 등록의 종류와 그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- 2. 생략 3. 논문등록 : 수료 후 논문세미나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	제7조(등록의 종류) 대학원 등록의 종류와 그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- 2. 현행 3. 연구생등록 :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논문제출 자격을 재부여받고자 하는 학생	등록의 종류 중 연구생 등록에 대하여 현실화하고자 함.
제18조(논문지도 학생수의 제한) 1인의 논문지도교수가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논문세미나를 시작하는 학생을 기준으로 동일학기에 2명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.	제18조(논문·연구보고서 지도 학생수의 제한) 1인의 논문지도교수가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논문·연구세미나를 시작하는 학생을 기준으로 동일학기에 2명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.	학위청구논문 대체자는 연구세미나를 수강함에 따라 본 조항에 연구세미나 지도학생도 포함하고자 함.
제19조(수강 신청 및 변경) 대학원의 학생은 매 학기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교과목의 수강신청은 정해진 기간내에, 변경은 매학기 개강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할 수 있다.	제19조(수강 신청 및 변경) 대학원의 학생은 매 학기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교과목의 수강신청 및 변경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.	수강신청 및 변경기간을 정해진 기간으로 변경하고자 함.
제27조(논문지도교수의 자격) 대학원 과정의 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은 제20조에 준용한다.	제27조(논문지도교수의 자격) 지도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이상의 본교 간호학 전공 교원으로 한다.	제47조에도 논문지도교수의 자격 개정
제29조(종합시험) ① 학위청구 논문제출자와 학위청구논문 대체자의 종합시험은 3과목을 응시하여, 3과목 모두 70점 이상으로 취득하여야 한다.	제29조(종합시험) ① 학위청구 논문제출자와 학위청구논문 대체자의 종합시험은 3과목을 응시하여, 각 과목별로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	종합시험의 과목별 합격을 인정하기 위함.

김종인

김대용

조우권

② ~ ④ 생략	며,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. ② ~ ④ 현행	
제34조(논문제출년한) 제14조의 규정 중 재학년한의 규정은 논문제출년한에 준용한다.	제34조(논문제출년한) 논문제출년한은 대학원 학칙 제29조에 따르며, 제14조를 준용한다.	논문제출년한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.
제40조(합격된 논문의 제출) ① 학위과정에서 논문심사에 합격된 학생은 학위수여일 30일 전까지 학위논문 4부와 논문 내용이 수록된 학위논문 최종 원본파일을 도서관홈페이지의 학위논문제출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고, 학위논문원본파일 제출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② 생략	제40조(합격된 논문의 제출) ① 학위과정에서 논문심사에 합격된 학생은 학위수여일 30일 전까지 학위논문 3부를 대학원에 제출하고, 학위논문 최종 원본파일과 학위논문원본파일 제출확인서를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 ② 현행	논문제출 절차를 현실화 하고자 함.
제40조의3(학위청구논문 대체심사) ① 생략 ② 학위청구논문 대체심사는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가 심사하며 “합격(P)”, 또는 “불합격(F)”으로 판정한다. ③ 생략	제40조의3(학위청구논문 대체심사) ① 생략 ② 학위청구논문 대체심사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2명의 심사위원이 심사하며 “합격(P)”, 또는 “불합격(F)”으로 판정한다. ③ 현행	학위청구논문 대체심사위원 구성에 대하여 개정함.
제47조(논문 지도교수 자격) 지도교수는 당해 대학원 학생과 전공분야가 유사한 본교의 교원으로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이상으로 한다.	<삭제>	논문 지도교수 자격에 대한 규정이 제10장 직제에 규정되는 것보다 제6장 논문지도 제27조로 규정되는 것이 타당함.

김평인

김대용

조무권

- 한혜실 의장이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7조 3호 '논문등록'을 '연구등록'으로 하는 수정 의견을 개진하다.
- 김대용 의원이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40조의3에서 외부 심사위원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규정이 세밀하게 검토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다.
- 형희경 교무처장이 의견에 대해 대학원장과 재검토하기로 하다.
- 논의 후 본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대학에서 검토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이외의 규정 개정안은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조우진 의원의 동의와 함선희 의원의 재청으로 참석 의원 9명 중 9명이 찬성하니 의장이 예수대학교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하기로 의결하였음을 공포하다.

5) 제5호 의안 :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간서명자 지명 건.

- 한혜실 의장이 본 회의록 간서명자의 지명을 요청하니 김동인 의원, 김대용 의원, 조우진 의원 이상 3명이 추천되니 지명하기로 하고 참석의원 9명 중 9명의 찬성으로 지명 의결하다.

9. 폐회선언

- 한혜실 의장이 폐회에 대한 성안을 요청하니 이영섭 의원이 동의하고 함선희 의원이 재청하여 의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폐회를 선언하니 16시 11분이었다.

김동인

김대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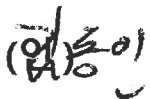
조우진

기록 : 한송희간사 

확인 : 김대용의원 

이정옥의원 

조은미의원 

김동인의원 

조우진의원 

김예은의원 

한혜실의원 

함선희의원 

이영섭의원 

김동인

김대용

조우진